

위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!
강남구 제6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석주 위원입니다.
본 위원이 소개한 「위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청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광장동 위커힐 아파트 51~53동 거주민들이 도시계획이 정상화된 주거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실시하고 11~33동과 51~53동을 동일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
- 배경을 설명 드리면, 광장동에 위치한 위커힐아파트 51~53동은 1979년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‘대지가 지역에 걸칠 때에는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’ 하도록 한 당시 건축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11~33동과 함께 허가를 받아 하나의 단지로 건축되었습니다.
-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 상 자연녹지 지역 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여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
- 그간 행정관청은 일반주거지역 11~33동과 자연녹지지역인 51~53동의 개별 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과세처분 하는 등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인정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였어야하나 주거실태와 용도지역이 부합하지 않은 이 지역을 40년 동안 방치하여 왔으므로, 이제라도 거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.
- 11~33동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51~53동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워커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, 단지출입구, 난방·전기·수도 등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14개동 중 11개동만 별도로 재건축 추진 시 나머지 3개동은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하나의 단지입니다. 또한, 자치위원회 의사결정이 공동결정으로 이뤄지고 대수선 총당금 등 모든 행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집행하고 있는 하나의 주거생활권이므로 동일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일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충분히 검토하시어 이 청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